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50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 백종헌・지성호・이주환

박성민 · 서병수 · 장제원

강대식 • 이태규 • 양금희

정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 관계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물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하 "해외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 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매하는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된 제	-1l -2l Al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
	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
	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서 구매하는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u>을 말한다.</u>
<u><신 설></u>	제25조의2(해외식품등에 관한 위
	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
	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